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정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. . .

발 의 자 : 김정도 의원(1인)

찬 성 자 : 김민성·김영길·김영태·김춘남
이명희·이상호·장미경·허민근
의원(8인)

1. 제안이유

조례 전반을 정비하며,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부서검토: 교육청소년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 (이하”를 “사업(이하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보조금신청서”를 각각 “보조금교부신청서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목적외의 사용금지)”를 “(목적 외 사용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목적외”를 “목적 외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보조사업내용”을 “보조사업 내용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구미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각급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<u>사업</u> 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제5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<u>보조금신청서</u>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<u>보조금신청서</u>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처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<u>목적외의 사용금지</u>) ① (생략)</p> <p>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</p>	<p>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</u>(이하 ----- ----- <u>각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----- ----- ----- <u>보</u> <u>조금교부신청서</u>----- -----.</p> <p>②----- ----- <u>보조금교부신</u> <u>청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<u>목적 외 사용금지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

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 ,

1.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

2. ~ 4. (생략)

제6조의2(보조사업의 변경·취소)

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11조 (생략)

1. ----- 목적 외-----
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보조사업의 변경·취소)

① -----
보조사업 내용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2.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
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교육청소년과

조 례 명

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검토 사항

- 근거 법령
 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
 -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□ 주요 사항

- 준용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
□ 검토 결과

- 부서 판단 결과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, 본 조례를 따른다는 보완적인 규정이 있으나, 상기 조항 신설로 해석상의 여지를 줄이고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- 기대효과: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확보
- 소요예산: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재정수반(비용 발생) 요인 없음
-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